

윤리경영연구 편집방침

제 정: 2014년 9월 1일

개정: 2018년 2월 6일

개정: 2020년 4월 30일

개정: 2021년 4월 15일

윤리경영연구의 임무는 기업윤리에 관련된 학술적 및 실무적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에 기여하는 데 있다. 본 학술지는 구체적으로 (1) 기업윤리와 관련된 학술연구(개념적 또는 경험적 연구), (2) 윤리경영 우수기업의 사례연구, (3) 기업윤리 관련 교육용 사례, (4) 기업윤리 관련 서적에 대한 서평, (5) 기타 관련 연구를 게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윤리경영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논문이라면 누구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심사과정을 거쳐서 게재가 확정되면 모든 저자(주저자와 공동저자 포함함, 다만, 초청된 기고자나 외국인 저자는 예외로 함)는 학술지가 발간되기 이전에 학회가입 절차를 밟아 회원이 되어야 한다.
2. 투고논문은 다른 발간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 그리고 현재 다른 발간물에 투고하지 않은 것 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3. 윤리경영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하며, 온라인 논문투고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심사과정이나 학술지 발간 이후에 표절 또는 이중게재 등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주장되거나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논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심사중단, 게재거부와 게재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윤리검증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하며, 위원은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윤리경영학회가 갖는다. 온라인 논문투고시에 모든 저자는 <논문제작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출판 이전이나 이후에 저자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논문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학술 및 교육의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게재된 논문은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5. 투고논문의 심사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6.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20만원이며(단, 사사가 포함된 논문은 30만원), 저자는 학회지가 발간되기 전에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윤리경영연구의 편집, 발행과 관련한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8. 투고논문의 심사과정과 게재여부 판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윤리경영연구 투고규정에 맞게 제출된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은 논문에 대해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해상충에 의한 편향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의 경우, 투고된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 (2)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이와 동시에 편집위원들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이 때, 추천 받은 심사위원의 이해상충 여부(예: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와 정도를 판별하고, 제척 및 회피 대상을 심사위원 선정에서 제외한다.
 -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함)으로 진행한다.
 - (4)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제한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한 뒤 심사위원을 교체하도록 한다.
 - (5) 두 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무수정게재’로 판정한 경우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두 심사위원 모두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두 심사위원의 판정이 ‘무수정게재’와 ‘게재가능(수정후바로)’로 이루어지거나, 두 심사위원 모두 ‘게재 가능(수정후바로)’인 경우, 수정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게재 결정한다. 두 심사위원의 판정이 게재가능(무수정 또는 수정후바로)과 ‘게재불가’로 나뉠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추가로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가부 또는 ‘수정후재심’을 결정한다. 두 심사위원의 판정이 모두 ‘수정후재심’인 경우 그에 따라 ‘수정후재심’을 결정한다. 두 심사위원의 판정이 ‘수정후재심’과 ‘게재불가’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로 제3의 심사위원에게 추가 심사를 의뢰하거나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이때 제3의 심사위원에게 추가 심사를 외퇴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정후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표 1> 참조).
 - (6)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최초 심사의원이 맡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과정 효율화를 위해 재심 이상 심사의 경우에는 수정후재심 판정을 내리지 않고, 무수정게재, 게재가능(수정후바로), 게재불가 중에서 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
 - (7) 학술지 편집의 책임을 맡은 편집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심사위원들이 요구하지 않은 수정요구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8) 논문의 수정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의 연장 요청 없이 2개월을 경과한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단,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각 2개월씩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2개월을 포함하여 총 6개월을 넘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표 1> 심사 결과에 따른 판정 과정

1차 심사과정			1차 심사결과	추후 심사과정
제1 심사자	제2심사자	제3심사자		
무수정게재	무수정게재	-	무수정게재	게재가능통보 후 최종논문접수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무수정게재	무수정게재	게재가능통보 후 최종논문접수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통보 후 심사종료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무수정게재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통보 후 심사종료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수정논문 접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무수정게재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통보 후 심사종료
게재불가	게재불가	-		

*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3의 심사위원에 심사를 의뢰하거나 게재불가 판정할 수 있음

** 재심 이상 심사의 경우 수정후재심 판정을 내리지 않음

- (9)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 판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절 검증 절차를 운영한다. 이해상충이 있는 게재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여 함께 출판해야 한다.
- (10)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근거를 갖춘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 14일 이내에 이해상충 되지 않는 편집위원 중 해당 논문 세부분야와 가까운 위원을 중심으로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임시 소집하고, 이의 신청 내용, 논문 원문,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알린다. 심의 결과로 이의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의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 내용에 관련된 심사자를 교체하여 해당 심사 차수의 절차에 맞게 재심사한다. 하나의 투고 논문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로 제한 한다.
9.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주제의 적합성(연구의 주제가 윤리경영과 관련되어 있는가?)
 - (2) 연구내용의 창의성(연구의 내용이 참신한가?)
 - (3) 연구방법의 타당성(적절한 연구방법이 선택되고 과학적으로 적용되었는가?)
 - (4) 이론적, 실무적, 교육적 기여도(학계와 사회에 대한 공헌이 충분한가?)
 - (5) 효과적인 의사전달(논문이 체계적이고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었는가?)
 - (6) 문헌고찰의 충실성과 서지정보의 정확성(국내외 관련 문헌 고찰이 충실히 이루어졌으며 참고문헌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영되었는가?)
 - (7) 초록의 완성도(초록이 논문 내용을 포괄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10. 논문게재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게재가 확정된 순서를 따른다. 단, 논문의 중요성과 독창성,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1.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에 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행 한다.
12. 윤리경영연구는 매년 7월 31일과 12월 31일에 2회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13. 본 방침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고, 그 내용을 즉각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학회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14.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윤리경영연구 투고 규정

개정: 2018년 2월 6일

개정: 2018년 3월 2일

개정: 2020년 4월 30일

- <윤리경영연구>는 매년 7월 31일과 12월 31일에 2회 발간됩니다.
- 별도의 원고 마감일은 없으며, 조직경영의 윤리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든 언제든지 논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확정된 논문은 게재확정순서에 따라 윤리경영연구에 게재됩니다.
- 논문을 제출하실 때는 본 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https://kaobe.jams.or.kr/>
 - * 연구윤리규정: <http://www.kaobe.or.kr/home/page/?pid=ethics>

1. 논문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지켜 논문을 작성하고, 윤리경영연구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가입 및 로그인하여 논문을 제출한다. 논문투고자는 논문제출시 연구윤리서약에 동의한 다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며, 저작권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및 서명한 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한다.
2. 원고의 접수일은 논문 파일을 JAMS에 투고한 날로 한다.
3. 원고는 국문, 국한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국문 원고는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의 순으로 작성한다. 영문 원고는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 국문초록의 순으로 작성한다.
4. 초록은 포괄성(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함), 정확성(내용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함), 표현의 적절성(적절한 용어와 표현을 활용해야 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길이는 1매, 20행(또는 200~250단어) 내외로 하며, 초록 하단에는 주제어(keywords) 3~5개 정도를 명시한다.
5. 초록을 포함한 전체 원고는 아래아 한글 2005 이상 혹은 MS WORD로 A4 용지에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위·아래 여백 20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20mm, 줄간격 160%, 큰제목 크기 18pt, 본문글자 크기 10pt, 1페이지 분량 39행으로 20매 내외로 한다.
6. 논문 제출시 투고논문과 동일하게 제목, 키워드, 초록, 영문제목, 영문키워드, 영문초록, 폐이지수 등을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입력한다. 투고논문은 국문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 부

- 록을 포함하여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되 투고자들의 개인정보(투고자의 소속, 이름, 연락처 등)를 삭제한 후 첨부한다.
7. 게재가 확정되면 집필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식에 따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학술용어는 되도록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약어의 경우 최초 사용 시 괄호 안에 풀어서 써야 한다.
 9. 모든 표와 그림은 설명하게 작성하고 표와 그림 상단에 해당번호(예: <표 1>, <그림 3>)와 제목을 붙이며, 표와 그림 하단에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10. 각주(footnote)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되, 어구의 오른편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며 그 내용은 각면 아래 부분에 작성한다.
 11. 논문 목차의 장, 절, 항의 구분은 장의 경우 I, II, III으로, 절의 경우 1, 2, 3으로, 그리고 항의 경우 (1), (2), (3)으로 표시한다.
 12. 본문 중 문현을 인용하는 경우 이름과 발표년도를 표기한다(예: Carroll(1999) 혹은 (최병권·문형구·주영란, 2017)). 특정 부분을 직접 인용한 경우에는 콜론(:)으로 구분하여 페이지를 함께 기재한다(예: Victor & Cullen(1998: 105) 혹은 (Victor & Cullen, 1988: 105)). 인용 문현의 저자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을 다 표기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경우에는 최초 인용 시에만 모든 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이후에는 첫 저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그 뒤에 여러 명의 공동저자가 있음을 표기한다(예: (Verbeke et al., 1996) 혹은 (박현준 등, 2004)). 저자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첫 저자의 이름과 여러 명의 공동저자가 있음을 표기한다. 공동연구 저자의 이름은 국문문현의 경우 가운데점(•)으로 구분하고, 영문문현의 경우 쉼표로 구분하되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붙인다. 여러 문현을 동시에 인용 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되, 국문문현의 경우 첫 저자명의 가나다순(예: 김선화·이계원, 2013; 정홍준·신민주, 2016; 최병권·문형구·주영란, 2017), 영문문현의 경우 첫 저자명의 알파벳순(예: Brammer, Millington, & Rayton, 2007; Porter & Kramer, 2006, 2011; Vlachos, Panagopoulos, & Rapp, 2014)으로 배열한다. 본문에서 인용한 문현은 참고문현에 서지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13. 참고문현은 본문의 마지막에장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참고문현의 기재순서는 국문문현, 외국어문현의 순서로 하며, 국문문현의 경우 첫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현의 경우 첫 저자명의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참고문현의 편집에는 첫줄 30pt 내어쓰기를 적용한다.
 14. 참고문현의 표기방법은 아래 보기와 같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이름(국내문현의 경우 꺽쇠(') 안에, 외국문현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권(Vol), 페이지 순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이름, 연도, 도서이름(국내문현의 경우 꺽쇠(') 안에, 외국문현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사 이름의

순으로 기재한다. 저자가 2명 이상일 때 국문문헌의 경우 가운데점(•)으로 저자이름 간 구분하고, 영문문헌의 경우 쉼표로 저자이름 간 구분하되 각 저자의 이름은 영문 성(family name) 다음 쉼표 후 영문 이름(first name, middle name)의 첫 글자와 구두점을 표기하며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붙인다. 인터넷 기사의 경우 웹 주소를 기재하고 게시일을 명시한다.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보기)

국문문헌:

- 강수돌. (2014). 「자본주의와 노사관계: 삶의 질 관점」. 한울아카데미.
- 박현준. (2002).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편), 「새로운 경쟁력, 기업의 사회적 성과」, 286-318. 예영커뮤니케이션.
- 유용근·이상혁·전성민. (2019). 기업 윤리경영이 기업의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 연구. 「윤리경영연구」, 19(2), 1-27.

영문문헌:

- Bandura, A. (2016). *Moral disengagement: How people do harm and live with themselves*. Worth Publishers.
- Bindl, U. K., & Parker, S. K. (2010). Proactive work behavior: Forward-thinking and change-oriented action in organizations. In B. Zedeck (Ed.), *APA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 567-59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ueller, K., Hattrup, K., Spiess, S., & Lin-Hi, N. (2012). The effe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employees' affective commitment: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6), 1186-1200.

인터넷 정보:

- Marcec, D. (2019). CEO tenure drops to just five years. *Equilar* (January 19).
<https://www.equilar.com/blogs/351-ceo-tenure-drops-to-five-years.html>
- MacGillis, A. (2019). The case against Boeing. *The New Yorker* (November 11).
<https://www.newyorker.com/>
- Walker, A. (2019). Germany avoids recession but growth remains weak. *BBC News* (November 14). <https://www.bbc.com/news/business-50419127>

DOI 포함 문헌:

- Brown, M. E., & Mitchell, M. S. (2010). Ethical and unethical leadership. *Business Ethics Quarterly*, 20, 583 - 616. <http://dx.doi.org/10.5840/beq201020439>

윤리경영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8년 2월 21일

개정: 2020년 9월 19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발간하는 윤리경영연구의 편집위원회 구성, 논문 심사 및 발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함께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장과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윤리경영연구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윤리경영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진행하고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② 윤리경영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발간업무를 수행한다.
- ③ 윤리경영연구의 편집방침, 투고규정, 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제정한다.
- ④ 기타 윤리경영연구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자격)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최근 10년 내에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10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기업에서 윤리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4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대학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장의 임명) ① 학회장은 편집위원장의 임명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정위원회는 현임 편집위원장의 임기 60일 전까지 구성한다.
- ③ 선정위원회는 학회장, 차기 학회장, 직전 학회장,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이 추천한 임원 2인으로 구성한다.
-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현 편집위원장의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편집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제6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① 편집위원은 인사조직, 생산운영, 마케팅, 재무, 회계, 경영정보 등 경영학의 세부 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대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라/광주, 제주, 해외 등 9개 지역 중 최소 5개 이상의 지역에서 각각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편집위원 선정내용을 서면으로 학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학회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7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편집방침과 투고규정)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 및 투고규정은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삭제>
-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위촉 등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 ④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 ⑤ 심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한 후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제10조(회의) ① 편집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심사 및 학회지 발간 관련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한다.

- ② 편집위원회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③ 편집위원회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1조(의결) 편집위원회는 출석위원을 포함한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록

제12조(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윤리경영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윤리경영학회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부 칙 (2018. 2. 21 제정)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19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윤리경영학회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제정: 2007년 3월 15일

개정: 2020년 9월 19일

제1절 용어의 정의

제1조 위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든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변조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표절

[표절]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말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참조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기존에 게재하거나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일부)이라도 그에 대한 인용이나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결과 최초의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자기표절에 해당한다.

제4조 이중게재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자기표절·짜깁기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이차게재의 경우는 반드시 기존 출판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차게재임을 명시해야 한다.

제5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 2 이해상충

[이해상충]은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같은 연구의 일차적인 이해와 관련한 전문적 판단이 재정적인 관계, 개인적 친소, 학술적 경쟁, 지적인 신념 등과 같은 이차적인 이해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제6조 기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기타 학문 연구에 있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윤리규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제2절 연구윤리규정: 연구자

제7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 (1) 투고된 논문의 저자는 사용된 자료, 연구내용, 혹은 연구방법 등에서 독창적이어야 하며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 (2)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타인 및 본인의 연구 과정 또는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연구물의 이중 게재 및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9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금지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10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의 2 이해상충의 공개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연구에 편향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재정적, 개인적 관계를 밝힐 책임이 있다.

제3절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이 있는지 확인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절 연구윤리규정: 심사위원

제15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논문에 대한 의견을 편향시킬 수 있는 이해상충을 편집위원회에 공개해야 하며, 편향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 원고에 대한 심사를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제16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7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 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심사중인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해당 논문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5절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20조 한국윤리경영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2조 윤리위원회 목적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학회가 정한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 및 출판 윤리 위반 여부 및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권한은 편집위원장이 갖되,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부 록

제28조 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이의제기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조사와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윤리경영연구 목록에서 삭제하며,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자격 정지나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이 조처를 대상자의 소속 기관과 학회에 알릴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사단법인 한국윤리경영학회 조직구성

고문 (역대 회장)	고승희(단국대), 김성수(경희대), 김영조(부경대), 김정원(강원대), 박경규(서강대), 박기찬(인하대), 박오수(서울대), 박우성(경희대), 박원우(서울대), 백기복(국민대), 유 규창(한양대), 이영면(동국대), 장영철(경희대), 주인기(연세대)
회장	이호영(연세대)
감사	구자숙(경희대), 신인용(부경대)
부회장	장금주(수석부회장, 서울시립대), 김경수(전남대), 김기태(상명대), 김봉진(이화여대), 강승완(가천대), 강영순(제주대), 김종배(성신여대), 김종인(건국대), 김효선(중앙대), 민순홍(연세대), 박노윤(성신여대), 박상언(충북대), 성상현(동국대), 양동훈(서강대), 오흥석(연세대), 이영한(서울시립대), 조봉순(서강대), 채인석(센슈대), 최순규(연세대)
산학협력 부회장	김기령(풀무원), 김석규(BNK인재개발원), 김정래(CCSR), 박형건(우리회계법인), 성기영(inh.r.), 신왕건(CFA협회), 신재욱(FMASSOCIATES), 양세영(윤리경영원), 양춘승(KoSIF), 이용각(이노크루), 이재권(인덕회계법인)
상임이사	강민정(인천대), 구자숙(경희대), 권기육(건국대), 권성우(고려대), 권종육(강원대), 김민수(한양대), 김상수(용인대), 김상일(아주대), 김정훈(제주대), 김진육(건국대), 김찬중(충북대), 노한균(국민대), 노현탁(연세대), 류성민(경기대), 류정은(마이어스에이치알랩), 문재승(대전대), 박재홍(EY한영회계법인), 박정규(동국대), 박현영(안양대), 변혜영(강원대), 손승연(국방대), 윤동열(울산대), 윤석화(서울대), 이돈희(인하대), 이동섭(고려대), 이영석(ORP연구소), 이은철(동덕여대), 이주현(연세대), 이준우(한밭대), 이춘우(서울시립대), 정영균(서강대), 정주렴(서울시립대), 조윤형(조선대), 조창훈(한림국제대학원대학), 차윤석(동아대), 최우재(청주대), 최종인(한밭대), 이아영(강원대), 채수준(강원대), 신일항(가천대), 이영한(서울시립대)
이사	강윤식(강원대), 권순백(대구카톨릭대), 권순원(숙명여대), 김광현(고려대), 김병직(울산대), 김보영(국민대), 김성식(이에스아이하모니), 김성환(광운대), 김신일(한국장학재단), 김억환(차의과학대), 김영준(한국외대), 김지현(연세대), 김태현(카이스트), 김태형(안동대), 김학수(충북대), 김해룡(울산대), 김현정(인하대), 노상충(캐럿글로벌), 문정빈(고려대), 박성종(안양대), 백윤정(경북대), 서정화(경북대), 설현도(단국대), 심선아(재능대), 안성희(가톨릭대), 양대규(경희대), 오명전(숙명여대), 오원용(Univ. of Nevada, Las Vegas), 유혜영(한세대), 이기은(대구대), 이문영(덕성여대), 이상명(한양대), 이준서(동국대), 임상훈(한양대), 임성원(한덕경영연구소), 임승희(수원대), 정진경(CNC연구소), 천장현(머서코리아), 황문호(경희대)
상임위원장	편집위원장: 이동섭(고려대) 윤리경영대상심사위원장: 김정원(강원대) 학술위원장: 이은철(동덕여대) 산학협력위원장: 이용각(이노크루) 학제협력위원장: 채수준(강원대) 기업윤리교육위원장: 조창훈(한림국제대학원대학) 행정부국장: 서정화(경북대)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원 가입신청서

성명	한글 영문
소속단체	
주소	
연락처	사무실전화 : 핸드폰 : e-mail :

본인은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다음의 이메일로 보내 주시고,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영수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내역	회비	체크해주세요
일반회원	영구회원비	10 만원	
	연회비	2 만원	

* 참고: 영구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입금구좌> 우리은행 1005-801-065622

예금주 : (사) 한국윤리경영학회

<주소>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212동 경영대학 611호

<연락처> Tel: 010-4116-9624 (사무간사)

E-mail: kabethics@gmail.com

* 기타 문의사항은 위의 한국윤리경영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경영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 이동섭 [고려대]

편집위원 : 강승완 [가천대, 인사조직]

김석영 [인천대, 인사조직]

김영춘 [울산과기원, 조직이론/경영전략]

김태동 [차의과학대, 회계]

김태완 [Carnegie Mellon Univ, 기업윤리]

문정빈 [고려대, 국제경영/기업윤리]

박수훈 [Nanjing Audit Univ, 생산/OR]

신수영 [영남대, 인사조직]

오원용 [Univ of Nevada, Las Vegas, 경영전략]

윤현식 [전남대, MIS]

이은석 [중앙대, 인사조직]

이창민 [한양대, 국제경영/재무]

장영균 [서강대, 기업윤리]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노사관계]

강철 [서울시립대, 기업윤리]

김선혁 [고려대, 조직이론]

김지현 [연세대, 경영전략]

김태현 [KAIST, 조직이론]

방호진 [제주대, 인사/노사관계]

신인용 [부경대, 인사조직]

이아영 [강원대, 회계]

이준구 [한양대, 국제경영]

임승희 [수원대, 마케팅]

최용득 [전남대, 인사조직]

윤리경영연구

<제21권 제1호> 2021년 7월

2021년 7월 29일 인쇄

2021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호영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윤리경영학회

TEL : [02] 2123-5484

제작처 : CFO아카데미 대표이사 전병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8-37 아이네트빌딩 5층

전화 : (02) 501-2322

E-mail : jbm@naver.com

<비매품>